

제28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 
제1차 회의 2022. 4. 25.(월)

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

자치행정위원회

#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## 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 
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시설 이용료 추가 경감을 통하여 부모의 경제·심리적 양육 부담을 덜고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대응에 이바지하기 위함
-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보완·정비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이용료의 감면 기준 일부 수정 및 신설 : 안 별표 4
  - (일부수정) 감면율 20% :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→ 두 자녀를 둔 가족
  - (신설) 감면율 100% :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
-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이용료 면제 조문 신설 : 안 제8조제1항
- 일부 조문 현행화 정비
  - 안 제2조제8호, 안 제13조제2항, 안 제15조제1항, 안 제16조, 안 제23조, 안 제27조제1항, 안 제29조제2항, 안 제33조제3항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다. 관련부서 : 보육정책과

라. 입법예고 : 2022. 3. 3. ~ 3. 23. (20일간) / 의견없음.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복합문화 체험공간인 어린이비전 센터의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 및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.

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였고, 안 제16조의 대관료의 반환과 관련된 내용의 전개방식을 ‘항과 호’에서 ‘호와 목’로 바로 잡았으며, 안 별표 2의 ‘이용료의 감면 기준’에서 “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”에 대하여는 모든 유료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100%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다출산에 따른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체계 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(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### 1. 예산상 조치 수반 요인

- 본 조례안의 예산상 조치 수반 요인으로는 일부 이용자\*에 대하여 해당 놀이체험시설의 이용료를 추가적으로 경감(면제)하는 사항이 해당됨 (세입 감소) : 제8조제2항 [별표 2]
- ※ \*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세입(입장료 수입) 감소가 예상되나 그 금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
- 개정사항

기존	변경(개선)(안)
두자녀 이상을 둔 가족: 이용료 20%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두자녀를 둔 가족: 이용료 20% 감면</li> <li>◦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: 이용료 면제</li> </ul>

- 예산추계

과목	개정전 세입(연수입)		개정시 감소예상액
관)경상적 세외수입	○ '19년도 기준 (정상운영)	578,436천원	△약 10%(예상) ※ 연평균 1억원 미만
항)사용료수입 목)입장료수입	○ '21년도 기준 (코로나19 등 인원제한)	233,787천원	

### 4. 작성자

복지국 보육정책과장 박미경

(현행 조례)

##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( 제정) 2015.05.14 조례 제1254호

(일부개정) 2016.10.27 조례 제1401호

(일부개정) 2020.07.30 조례 제1763호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아이 키우기 좋은 감성보육도시 조성을 위해 영유아와 어린이의 복합문화 체험공간을 제공하고, 보육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체험전시실”이란 다양한 분야의 놀이와 체험을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정서와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.
2. “라바파크”란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에 설치된 라바캐릭터 놀이시설과 교통안전을 테마로 안전 및 질서에 관한 교육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.
3. “사계절썰매장”이란 사계절 이용 가능한 슬로프 시설로 썰매를 활용하여 체험하는 가족친화형 놀이공간을 말한다. <개정 2016.10.27>
4. “기타시설”이란 체험전시실, 라바파크, 사계절썰매장, 다목적교육실, 다목적강당을 제외한 공간을 말한다. <개정 2016.10.27>
5. “이용료”란 센터 내 체험전시실 및 라바파크, 사계절썰매장, 다목적교육실, 다목적강당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. <개정 2016.10.27>
6. “대관”이란 다목적교육실, 다목적강당, 기타설비의 대여를 말한다.
7. “영유아”란 만 5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 <신설 2016.10.27>
8. “어린이”란 초등학생 또는 만 5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 <신설 2016.10.27>

제3조(위치) 센터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96에 둔다.

제4조(설치)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적인 체

협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.

제5조(시설 및 기능) ① 센터는 체험전시실, 라바파크, 사계절썰매장, 운영사무실 및 기타시설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.10.27>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센터 내 설치된 각 시설물 운영 사업
2. 영유아 및 어린이 체험·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
3. 지역사회 및 가족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사업
4. 영유아, 어린이, 가족단위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연구 사업
5. 놀이와 교육의 융합시설인 라바파크, 사계절썰매장 운영 사업 <개정 2016.10.27>
6. 시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추진 사업
7.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6조(개관 및 휴관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1월 1일
2. 설날(음력 1월 1일)
3. 추석(음력 8월 15일)
4. 매주 월요일. 다만,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
5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

제7조(이용시간 등) 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

② 매표시간은 10시부터 개장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.

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8조(이용료 등의 징수 등) ① 센터 내 체험전시실, 라바파크, 사계절썰매장 등을 이용하는 사람(이하 "이용자"라 한다)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,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6.10.27>

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.

③ 센터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주차장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<신설 2020. 7. 30.>

[제목개정 2020. 7. 30.]

제9조(이용 및 입장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센터 입장을 제한하거나,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
1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
2. 과도한 음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

3. 위험물이나 악취·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
4. 그 밖에 센터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0조(행위의 제한) ① 이용자는 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, 취식을 하는 행위
2.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
3.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
4. 고성·난무·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
제11조(이용자의 손해배상) 이용자가 센터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대 관

제12조(대관허가 등)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전시·행사 등을 우선으로 하여 센터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센터의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목적교육실
2. 다목적강당
3. 그 밖에 기타시설

제13조(대관시설 사용시간)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7조에 따른 이용시간 내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 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
제14조(대관허가 신청) ① 센터 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(대관료의 징수 및 감면) ① 센터 시설을 대관할 경우에는 별표 4와 별표 5에 따른 대관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,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시장이 지정 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30.>

② 남양주시가 직접 주최·주관 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와 관련한 교육, 학술 활동, 문화행사 등에 대해서는 무료로 대관한다.

제16조(대관료 반환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

① 대관료의 전부 반환

1. 천재지변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2.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·정지되었을 경우
3.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

② 위약금(20퍼센트)를 공제한 잔액 반환 :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

제17조(대관허가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2. 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3. 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대관자의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
4. 제18조 2호 및 3호에 따른 대관허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
5. 그 밖에 센터 관리 및 운영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

제18조(대관허가의 취소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대관의 제한·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관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1. 재해·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2.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3.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
4. 제17조 각 호 중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5.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

### 제3장 운영자문위원회

제19조(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)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

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의 장과 문화계, 보육계 전문인사 및 일반시민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(性)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센터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센터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의 임직원
3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⑥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20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전시 및 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
3. 체험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관한 사항
4. 다른 유사시설이나 각종 문화시설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1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센터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
3. 위원회 심의·자문 결과 정리 및 보고
4.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22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
2. 사망,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
4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
제23조(수당 등)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제4장 위탁관리

제24조(위탁관리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
2.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·장비·시설 및 기술수준
3. 책임감·능력·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
4.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·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

③ 위탁기간은 위탁운영 내용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25조(위탁운영지원) 시장은 센터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6조(위탁운영계약)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수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·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

제27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·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위탁시설·장비·입장료 등을 시설의 위탁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개·보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보수의 경우에는 사후보고 할 수 있다.

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학교,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수탁자는 매년 예산·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8조(지도감독)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위탁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,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29조(수탁자의 손해배상)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남양주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위·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·수탁 계약 기간 종료 후 30일까지로 한다.

제30조(시설 및 장비의 원상복구) ① 수탁자는 센터 시설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,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31조(위탁계약의 해지 등)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1. 수탁자가 제27조를 위반하였을 때
2.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
3.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
4.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## 제5장 자원봉사자

제32조(자원봉사자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이용자 안내 및 시설관리, 그 밖에 프로그램 보조인력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,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「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3조(편의시설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,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라 타인에게 대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으며,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편의시설의 대부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부칙 <조례 제1254호, 2015.5.14.>  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1401호, 2016.10.27.>  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1763호, 2020. 7. 30.>  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